



실적(1차) 신고 Q&A

IV. 실적신고 Q&A

■ 기술자 신고 입력 대상 및 증빙서류 제출사항?

- ⇒ 2025.12.31. 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종합·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전체를 입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자의 경우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만 하고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기술인협회 미등록된 기술자의 증빙서류는 온라인으로 업로드 (인쇄본 제출 불필요)

■ 무실적이라도 실적신고를 해야 하는지?

- ⇒ 실적이 없더라도 1차 및 2차 신고를 다 하여야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받을 수 있음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 뿐 아니라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모두 반영하여 산정



IV. 실적신고 Q&A

- 2025년에 준공했으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 대금 수령과 관계없이 실제 공사한 기성액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예시) 25년 10억 공사 계약 체결, 25년에 준공은 했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경우?

⇒ 10억으로 기성액으로 신고

※ 민간공사는 25년중 미준공된 공사는 일반적으로 25년말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신고,
25년중 준공된 경우 준공기성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으로 신고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26년도 1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4~5월중 추가보완)
- 계약만 체결하고 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적신고를 해야 하는지?

⇒ 계약이 발생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실적 신고를 해야 함(기성액 '0'으로 신고)
다만, 발주자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에 확인(도장) 받을 필요는 없으며,
이 경우 도급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첨부(업로드)

⇒ 2024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기성액이 없어서 전년도에 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2025년 기성액은 2024년 누락분으로 신고하지 말고 2025년도 종합건설공사로 신고
(신고번호 2025-)

※ 2024년에 기성액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누락분으로 신고

IV. 실적신고 Q&A

- 도급(하도급) 받은 공사가 공종이 2가지 이상인 경우 분리 신고 가능한지?
 - ⇒ 1건의 공사는 주된 공종으로 신고해야 하며, 공사를 2개의 공종으로 분리하여 신고 불가 원칙
 - ⇒ (공공공사) 입찰공고문상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업등록(면허)를 각각 요구하였고, 발주자가 증명서를 공종별로 나누어 확인하였다면 인정가능
 - ⇒ (민간공사) 최초 계약시 공종별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인정가능

IV. 실적신고 Q&A

- 준공이후 간접비 등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정산에 따라 추가 금액이 확정된 경우 실적 추가 신고시 실적인정연도는?
 - ➔ 승소시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 아닌 기성발생시점을 기준하여 신고하여야 함 (3년이전 실적인 경우 신고 불가)

-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입력시 하도급 입력이 제한되는 경우? 입력해야 하는 경우?
 - ➔ 2020(21).12.31. 이전에 발주한 공공공사(민간)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 제한과 하도급금액의 1/2가산규정이 있어 입찰공고(계약)일이 2020(21).12.31. 이전인 경우에만 입력

신고대상

- 2020.12.31. 이전에 입찰공고한 공공공사 또는 2021.12.31.이전 입찰공고(없으면 계약)한 민간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경우

①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하단의 "하도급 정보"의 "하도급" 클릭후 내용입력

· 하도급 정보 하도급 정보 조회 + 하도급 추가

하도급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하도급

종 계약역 함께	(백만원)	종 기성역 함께	(백만원)
상호*	<input type="text"/>	대표지 상명*	<input type="text"/>
발주등록번호*	<input type="text"/>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입찰 및 등록번호*	입찰 번호 <input type="text"/>
하도급 계약액*	<input type="text"/>	하도급 기성액*	<input type="text"/>

IV. 실적신고 Q&A

- 발주자의 분쟁 등의 사유로 기성실적증명서에 발주자 확인(도장)을 못받는 경우?
또는 민간공사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기성실적증명서의 기성금액이 다른 경우?

⇒ 추가 증빙서류 제출

- 진행중 공사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계약서 사본, 건축허가서, 착공신고 필증, **감리자 기성율 확인서**, 사유서 등
- 준공된 공사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계약서 사본, 건축허가서, 착공신고 필증, **준공검사 확인서**, 사유서 등

- 개인발주자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만 발급한 경우 입증서류는?

⇒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분을 발급하여 세무사(회계사) 도장을 받아 제출

- 종합사업자에게 10억원 미만 공사 하도급 금지 규정과

종합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없는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변경시 최초 공사에예정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변경된 계약금액 기준인지?

⇒ 최초의 공사에예정금액 기준

IV. 실적신고 Q&A

■ 선금을 받은 경우 실적신고 방법?

⇒ 25년에 실제 시공(기성)을 하지 않고 선금만 받은 경우 기성액으로 신고하지 않으며, 선금을 받고 시공도 한 경우에는 시공한 금액(선금을 정산해서 반영)으로 신고
 예시) 25년에 12월에 10억 공사를 계약 체결해서 선금으로 3억을 수령했지만 25년에 시공(기성)하지 않았다면 기성액은 '0'으로 신고

예시) 공공공사의 경우 25년 4월에 10억 공사를 계약 체결해서 선금으로 3억을 수령하고, 12월 기성금으로 3.5억을 수령, 25년 12월 31일 기준 공정율이 50%인 경우에는 선금을 정산한 금액을 포함해서 5억을 기성액으로 신고

25년 기성액(5억) = 전체 계약액(10억) X 공정률(50%)

5억 = [선금 3억 X 공정률(50%)] + 기성금 수령액(3.5억)

5억 = 1.5억 + 3.5억

IV. 실적신고 Q&A

- 일부 공사를 시공을 했지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로 노무비만 지급받고 기성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는 대부분 공공공사에서 운용되는 제도로, 공공공사의 경우 노무비 지급 유무, 세금계산서 및 대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공정률에 의한 실제 기성액을 기준으로 신고

예시) 25년에 10억 공사를 계약 체결해서 공사 진행은 50%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 및 기성금(노무비 제외) 수령은 0원이고 노무비만 2억을 수령한 경우

- ⇒ 10억 공사에 대해서 공사 진행률이 50%이므로 계산서 및 대금 수령과 무관하게 기성액은 5억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

다만, 기성율(진행률)에 대한 확인이 안된 경우 발주자와 기성금을 협의·확인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고, 기성액은 최소한 노무비 지급 이상 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

IV. 실적신고 Q&A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둘 다 갖고 있는 경우 전문공사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전문공사를 종합으로 수주를 한건지? 전문으로 수주한건지 확인 하는 방법?**
 - ➔ **전문공사를 종합공사업으로 수주한 경우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종합사업자신고) 상호시장 기성실적에서 신고하고, 종합협회에 제출**
전문공사를 전문공사업으로 수주한 경우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전문사업자신고) 기성실적에서 신고하고, 전문협회에 제출
 - ➔ **상호시장 진출 허용한 전문공사로서 나라장터(G2B)에서 개찰까지 한 경우 개찰결과 상세조회에서 상호시장 진출여부로 판단 가능**

입찰공고상세[공사]

WTO품목번호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여부	대상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진행현황	전체 1건			

순번	입찰공고번호	제입찰...	공고명	개찰일시	진행현황
1	R25BK01127354-000	000	하남중앙초 내진보강공사 제한입찰 공고	2025/11/11 11:05:0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0%; padding: 2px;"> ● 개찰완료 </div>

개찰결과상세조회

목록 전체 35건

사업자등록번호: 10 적용

순위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투찰금액(원)	투찰률(%)	(입찰가격 - A)/(예정가격 - A) * 100	추첨번호	투찰일시	비고	상호... 진출...
1	410-81-16256	주식회사 광명산업건설	신우영	803,507,700	90.349	89.823	12 03	2025/11/11 08:40:36	정상	Y

종합사업자신고 → 상호시장 기성실적 메뉴에서 전문공사로 신고

IV. 실적신고 Q&A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금액 입력방법?

→ 총공사금액을 하나의 신고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수계약별로 신고번호를 달리하여 신고

예시) 25년에 총공사금액 100백만원 계약한 장기계속공사로 2월에 1차분 30백만원 계약 및 준공하고 2차분 40백만원 11월에 계약해서 25년에 20백만원을 시공한 경우

○ 1차분

신고번호	당년도 계약액	당년도 기성액
	총계약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025-0001	30	30
	30	0

○ 2차분

신고번호	당년도 계약액	당년도 기성액
	총계약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025-0003	40	20
	40	0

IV. 실적신고 Q&A

- 장기공사 또는 이월공사의 경우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에 따른 기성 금액의 합계와 총공사금액과 백만원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신고 방법은?

⇒ 마지막 차수 또는 마지막 이월공사 실적에 차이나는 금액을 포함해서 신고해서 총공사금액과 일치시킴

예시) 24년에 200백만원 계약한 공사로 24년에 50.8백만원을 시공했고
25년에 나머지 149.2백만원을 시공해서 준공한 경우

○ 2024년

신고번호	당년도 계약액	당년도 기성액
	총계약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024-0001	200	50
	200	0

○ 2025년

신고번호	당년도 계약액	당년도 기성액
	총계약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024-0001	150	150
	200	50

IV. 실적신고 Q&A

-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과 보험 등 사후정산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최종 기성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신고 기준은?
 ⇒ 실제 기성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실적신고시스템상 계약금액과 기성액을 사후 정산 후의 실제 최종 기성액으로 변경하여 신고

예시) 25년에 공사금액 200백만원 계약하여 준공하였으나 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따라 최종 180백만원으로 정산하고, 계산서 발행 및 대금 수령도 180만원을 받은 경우

신고번호	당년도 계약액	당년도 기성액
	총계약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025-0001	180	180
	180	0

IV. 실적신고 Q&A

- 하도급사에서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이용 실적신고 전자승인을 요청한 경우 승인 방법?
 -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로그인시 건설사업자가 아닌 발주자(원도급자)로 체크하고 로그인 후 하도급사에서 요청한 실적신고 요청내용을 확인 후 승인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이용안내

2차 재무제표 신고

04.01 - 04.15 (법인)
04.01 - 06.01 (개인)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이용안내

고용평가 신청

04.01 - 04.15

신청기간이 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신청 가능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로그인 ? 건설사업자 발주자(원도급자)

사업자번호 사업자 번호 입력

로그인

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이동

• 전자승인 대상 목록

신고번호	업종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종류	처리상태	요청 업체명
	주력분야 또는 공종세분류	공사유형	도급구분	발주자명(원도급자명)	준공일자	등록일자	처리일자	업체 사업자번호
2024-0005	건축공사업	인천검단 AA35-1BL 및 AA35-2BL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 2차			2021.12.10	종합공사	승인요청	(주식회사) 대한건설
	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신설	원도급	(주식회사) 대한건설	2025.01.22	2023.11.14		616-88-12314
3 2024-0002	건축공사업	성동구 성수동(서울숲)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2022.06.03	종합공사	반려	(주식회사) 대한건설
	공장,작업장용건물	신설	원도급	(주식회사) 대한건설	2025.01.12	2023.11.13	2025.01.16	616-88-12314
2024-0001	도목공사업	효자도 해안도로 신설공사			2023.01.04	종합공사	승인	(주식회사) 대한건설
	일반도로	신설	원도급	(주식회사) 대한건설	2026.02.18	2023.11.10	2025.01.16	616-88-12314

IV. 실적신고 Q&A

발주자 전자승인

발주자 전자승인 상세

• 공사정보

신고번호	2024-0002		
공사명	성동구 성수동(서울숲)		
공사지역	서울 성동구		
공사현장 주소	(04779)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22-7		
공사유형	신설	공종분류	건축 / 공장,작
도급종류	원도급		

발주자 전자승인

승인 처리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	----

1 승인

2 반려

목록

발주자 전자승인

반려 처리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	----

• 발주자 정보

발주자명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발주자분류	민자유치 / 기타 민자사업
법인등록번호	910218-1000000	사업자등록번호	591-82-00031
대표자 성명	회장	전화번호	043-292-1107